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 심사경과

1. 심사일정

가. 제 안 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95. 1. 20.

다. 상정일자 : 95. 1. 24.

라. 의결일자 : 95. 1. 24.

2. 제안설명요지

가. 설 명 자 : 공영개발사업소장

나. 내 용 :

• 중동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89. 8. 3 조례를 제정 시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본 조례의 부칙에 의해 92년 12월 31일 폐지되었으며, 택지개발사업 및 주변도로 개설사업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하여 공영개발 사업소의 설치시한이 96년 12월 31일로 연장승인 됨에 따라 제정코자 함.

3. 질의답변요지 : 없 음

4. 반 대 토 론 : 없 음

5. 찬 성 토 론 : 공영개발사업소 설치가 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재제정하는 사안으로 기 시행했던 조례로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심사됨.

6. 소 수 의 견 : 없 음

□ 심사결과 : 원안의결(만장일치)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제정안

의안번호	347
의 결 년 월 일	95. 1. 27 (제34회)

제안년월일 : 1995. 1. 20

제 안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1. 중동지구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89. 8. 3 조례를 제정시행하였고, 90. 2. 7 건설부의 택지개발사업계획승인(사업기간 90. 2. 7 ~ 94. 12. 31)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 본 조례의 부칙에 의해 92년 12월 31일 폐지되었고, 택지개발사업 및 주변도로 개설사업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의 설치시한이 96년 12월 31일로 연장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제정근거법규

ㅇ 지방공기업법 제5조

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안)

제 1 조 (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경영수익사업

제 3 조 (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③관리자가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 5 조 (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6 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한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사업년도)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의 사업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저 9 조 (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 10 조 (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 11 조 (장기대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장기대부를 할 수 있으며, 대부한 회계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 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 14 조 (위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타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 15 조 (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도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 16 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여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 17 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게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게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개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9 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0 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1 조 (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 22 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 사업추진을 타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 23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